

의안번호	제 338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2월 2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	-----

제출연월일 : 2016년 2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 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 수정
- 이사로 추천 가능한 사람과 인원수를 조례에 반영 (안 제3조)
- 의료원 지도·감독 조항 중 도지사의“승인”조항 수정 (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원은 의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성별과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3.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제4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원 인사, 복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의료원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을 겸임한다.</p> <p>③ 이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5호 중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2.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p>제3조(임원) ① 임원은 의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성별과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 의료원관리 담당과장 1명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명 3.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p>④ (생략) ⑤ (생략)</p> <p>제4조(이사회) ① <u>법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u> ② (생략)</p> <p>제10조(지도·감독 등)</p> <p>① (생략) ② 원장은 <u>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1. (생략) 2. <u>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u> 3. (생략) (신설)</p> <p>(신설)</p> <p>4.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p>	<p>6. <u>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u></p> <p>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사회) ①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 제9조에 따라 의료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도·감독 등)</p> <p>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제4호의 경우에는 인가를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 2. <u>의료원의 인사, 복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u> 3. (현행과 같음) 4. <u>의료원 정관의 제·개정</u>에 관한 사항 5. <u>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u> 6. 그 밖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p>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

- 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 ⑤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